

## IV. 개선 과제

---

### 1. 중간정산제 점진적 폐지

- 노후생활자금 조기인출·소비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퇴직누적금 경감이라는 기업측의 이해, 긴급자금 마련이라는 근로자측의 이해가 맞물려 중간정산이 확대되어 왔음.
  - 기업의 퇴직금 부담감소, 퇴직금제도에서의 수급권보장차원에서 중간정산제가 도입되었지만 중간정산이후 노후자금소진 등으로 제도의 유용성문제가 대두되고 있음.
- 따라서 중간정산제 남발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기반와해 등을 고려하여 중간정산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.
  - 즉 중간정산제도를 단기간내 폐지시 기업 및 근로자의 선택권 제한과 법적 안정성 문제 등이 존재하므로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단계적인 폐지가 요구됨
    - 중간정산제도의 폐지 필요성은 근로자의 6.7%만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투자하고 있으며, 많은 기업들이 퇴직연금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중간정산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보험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음.
- 중간정산제도의 폐지는 제한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단계, 법정퇴직금의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단계, 완전히 폐지하

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음.

- 제한적 허용단계(제1단계) : 노사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누진제 폐지 등 퇴직금제도 개편의 경우로 한정
- 세제혜택 폐지단계(제2단계) : 현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조세체계를 폐지하고 일반소득세를 부과
- 완전 폐지단계(제3단계) : 법적·제도적으로 퇴직금제도상에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조항 삭제

## 2. 체계적인 중간정산 보완장치 마련

- 중간정산제의 점진적 폐지로 직면하게 되는 기업의 기업부담과 근로자의 필요자금 확보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간정산제의 보완조치 마련이 필요함.
  - 우선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퇴직연금제도로 이관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금세제의 차등화(소득공제 및 연금세제 폭 증대) 등을 통해 연금세제상의 혜택을 적극 부여할 필요성이 존재
  - 기업의 경우는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세제지원방안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함.
- 또한, 중간정산제 점진적 폐지의 보완조치차원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은 현행보다 다소 완화해 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.

- 중도인출 요건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에 비해 다소 완화해 줌으로써 중도인출이 중간정산을 대체하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중간정산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자금 대출제도의 도입, 이관성(Portability)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함.
- 중간정산제도가 지니는 폐단 및 동제도의 폐지시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한다고 하는 자세의 전환이 요구됨.

### **3. 장기적으로 퇴직연금가입 의무화 추진**

- 프랑스, 네덜란드, 덴마크 등은 노후소득보장 확대차원에서 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퇴직연금가입을 강제화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.
- 선진국의 경우 퇴직연금도입초기 임의가입방식을 적용하였으나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제도개혁과정에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의 대체용으로 가입을 의무화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임.
- 우리나라도 신설사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호주 등처럼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(퇴직연금중심으로 퇴직급여단일화)하는 방안이 필요함.

○ 즉 현행 퇴직연금 임의가입방식에서 퇴직연금 의무가입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여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존재함.

– 호주는 1992년에 강제가입 DC형보충퇴직연금(Superannuation) 제도를 도입하여 전체 근로자의 90%(시간제근로자 포함)가 가입함으로써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크게 제고됨.

□ 퇴직연금 의무화는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.

○ 즉, 기업규모(영세기업→중소기업→대기업), 기여형태(사용자 기여분 의무화 → 근로자 기여분 의무화) 등을 고려한 단계별 의무화가 필요함.

**<표 16>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**

구분	1 단계	2단계	3단계
기업규모별	영세기업	중소기업	대기업
	4인 이하 기업	4인 이상 기업	
기여형태별	사용자 기여분 의무화	근로자 기여분 의무화	

□ 퇴직연금 가입의무화 등으로 제도가 정착되는 단계(성숙)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차원에서 미·일 등 선진국 수준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관련 규정 마련이 요구됨.

○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연금제도 성숙기에는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여 연금재원의 소진을 최소화하고 일시금보다 연금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제반 규정 강화